문서번호	조경과-691
결재일자	2020.1.1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			시 민
주무관	조경관리팀장	조경과장	푸른도시국장
이진범	김병완	문길동	01/14 최윤종

I-SEOUL-U

2020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



2020. 1.

푸른도시국 조 경 **과**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 ■ '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	해당 없음	비고
정책의제 형 성	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			
	 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 	•		
정책수립	 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			
	 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			
정 책 집 행	 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 			
	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			
정책흥보	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・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			
기타사항	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			
	◆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			

2020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

겨울철 휴지기내 시도로 가로수에 대해 약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 고유 수형을 회복하고 생육을 개선하여,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

가로수 현황

■ 가로수 수량 : 1.357개 노선 306.313주

■ 수종별 현황 : 은행나무, 양버즘나무, 느티나무 등 총 62종

총 계	은행나무	양버즘나무	느티나무	벚나무	이팝나무	기 타
306,313주	109,784주	64,807주	35,880주	32,641주	17,639주	45,562주
(100%)	(35.8%)	(21.2%)	(11.7%)	(10.7%)	(5.8%)	(14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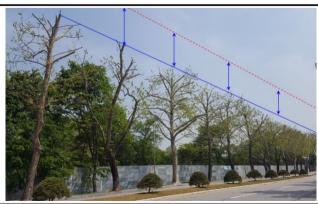
※ 기타 수종: 회화나무(2.6%), 메타세콰이어(1.7%), 소나무(1.5%) 등

Ⅱ 추진방향

- 노선별 수형 관리 결정(고유수형, 정형식) 및 통일성 유지
- 가로수 가지치기 사전 교육 실시로 강전지 방지
- 평절 억제 및 가지치기 사후 맹아지 관리를 통해 수형 훼손 방지



가지치기 우수사례-관악구



수고 낮추기 사례-노원구

Ⅲ 사업개요

■ 사업기간 : 2020. 1 ~ 2020. 3

사업대상 : 종로구 율곡로 등 시도로 57개 노선

O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는 한전과 협의 후 별도 시행

O 사각전지는 겨울철 가지치기서 제외하고 여름철 수형조절로 시행

수 량 : 양버즘나무 등 3종 6.411주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고
수 량	11,018주	9,936주	7,142주	6,411주	

■ 사업금액 : 963백만원(재배정 사업)

○ 지원근거: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6항

O 예산과목 : 조경과, 생활주변 녹지확충, 녹지보전 강화, 가로수 생육환경

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, 시설비

추진기관 :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

O 자치구별 세부 사업물량 및 예산내역은 붙임문서 참조

₩ 가지치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

- O 가지치기시 일부 평절 및 강전지 등으로 인해 수형 훼손(언론 보도 등)
 - ⇒ 사례 중심으로 가지치기 교육을 통해 가지치기 방식 개선 및 사업초기 현장 점검 실시 등 감독 철저
- O 벚나무 등 일부 수종은 불필요한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 건전성 악화
 - ⇒ 양버즘 외 타 수종은 지양(배전선로나 건물 저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)
- O 가로숲 조성대상지내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대형화되어 하절기 태풍 발생시 가로수 쓰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
 - ⇒ 대형 양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 수고 낮추기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







두절 및 강전지를 실시하여 수형을 훼손한 사례| 가지치기 민원처리시 수형을 훼손한 사례

가로수 가지치기 교육

- 🔲 근 거 :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4항
 -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
-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시행
 - O 교육시기 : 2020. 1. ~ 2.
 - 교육대상 : 가지치기 공사 계약상대자 소속 현장대리인 및 현장 근로자
 - O 교육내용 : 현장위주 교육 및 안전교육
 - 추진방법 :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 교육 위탁

※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

▶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를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

Ⅵ 행정사항

- 🔲 공사 착공(준공) 보고 철저
- 공사 발주시「입찰안내서」및「공사시방서」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

< 예 시 >

- ▶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하여야 하며,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.
- ▶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.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, 발주기관은 「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」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 - ㅇ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: 수목비의 20% +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
- ▶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,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.

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 활용 및 퇴비장 조성(시장요청사항)

-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로 생산하는 우드칩, 톱밥을 퇴비제조·토양개량 등에 활용하려는 시민에게 적극 지원
 - 지원방법 : **주민센터, 주말농장, 파쇄장 등에 비치**한 후 원하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
 - 홍보방법 : 지원방법, 시기 등을 구 소식지, 홈페이지 등에 게재
- 자치구 자체사업(구도로 가지치기) 발주시 서울시 승인 후 사업 시행
- 가지치기시 보행로에 도행안전도우미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
-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
- 붙임 1. 자치구별 대상노선 및 예산교부액 1부
 - 2. 보고 양식 (착공·준공 보고) 1부. 끝.